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1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서천호 · 이종배 · 김재섭
박덕흠 · 김종양 · 김기현
조인철 · 권영진 · 신성범
엄태영 · 안철수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

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
항공기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하는 항공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군용항공기”란 「 <u>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1.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항공기</u> -----.
<u><신 설></u>	가. 「 <u>군용항공기 운용 등에</u> <u>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u>따른 군용항공기</u>
<u><신 설></u>	나. 「 <u>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u> <u>인증에 관한 법률</u> 」 제2조 <u>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u> <u>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u> <u>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u> <u>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u> <u>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u> <u>운용하는 항공기</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